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출자 : 구미시장

2011년 3월 2일자로 구미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의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

1. 재의요구 관련조항

- 제9조(위원회구성)제4항제1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미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지역아동센터장
 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교육지원청 관계자
 5.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6.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⑤ ~ ⑥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
4. 센터의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센터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 검토

- 「지방자치법」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두어 자치단체의 형태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이는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權限)의 분리(分離)와 배분(配分)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의미하고,

관리인이란 상근·비상근,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 및 운영위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3. 재의요구 이유

○ 「지방자치법」상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반함

-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의 권한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안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하지만,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위원회 구성)제4항제1호에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으로 구미시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있음.
- 관련 법률에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기관의 관리·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관여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5조(겸직 등 금지)제5항 위반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이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단체이며 지역아동센터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에 해당하므로 구미시의회 의원은 위원회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구미시의회 의원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조례안 제9조제4항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취지 및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의 분리·배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됨.

○ 결론적으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구미시의회 의원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에 대하여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며,

-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공공단체로서 지역아동센터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에 해당하고 구미시의회 의원은 이 위원회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음.

이에, 구미시 의원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조례안 제9조제4항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재의요구가 불가피 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합니다.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2. 주요내용

-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 규정
- 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의 지원
- 구미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신고한 센터에 대한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3. 참고사항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4조, 제16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센터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농복합 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및 정서지도 프로그램 지원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4. 종사자 교육비
5. 프로그램 운영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지역아동센터장
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교육지원청 관계자
5.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6.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
4. 센터의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센터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위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와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이하생략)